

#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9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문화관광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(2024. 11. 29.)

## 2. 개정이유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과 국가유산청의 ‘국가유산 체제 전환’에 따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」 등 조례 6건의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체계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1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개정 상위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,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, “향토문화재”를 “향토유산”으로 용어를 변경함.
- 나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」의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」로 변경하고, 인

용된 법률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함.

- 다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.(안 제7조)
- 라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된 법률의 제명을 정비함.(안 제4조)
- 마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」 중 인용된 대구광역시 조례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고, 용어를 정비함.(안 제9조 및 안 제34조)
- 바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」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(안 제9조 및 안 제34조)
- 사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(안 제2조)

#### **4. 관계법령**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#### **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**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후 사용한 “문화재”라는 용어가 “문화 활동에 따라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”이라는 의미로 천연기념물·명승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
-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에서 기념물, 건조물군, 유적지를 “문화유산”으로 하고, 지질학적 생성물 등을 “자연유산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

- 정부가 2024년 5월 17일에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, 국회가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을 제정하면서 「문화재보호법」 등 11개의 법률을 제정·개정하여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변경함에 따라
- 이 조례안은 해당 법령을 인용하거나, “문화재”라는 용어를 “문화유산”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정·개정에 따른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